

서울특별시서초구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5호)

- 2002. 12. 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1.21. 서초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2. 12.14.
- 다. 상정일자 : 2002. 12.16. ~ 12.20.
- 라.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 제128회 제2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4일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128회 제2차 정례회시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기회재정국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소관 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음.
< 본회의 보고 제안설명서 및 상임위 예비심사보고서 참조 >

3. 검토보고의 요지

- 예산안 검토보고
: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보고가 되었으므로 생략
<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참조 >
- 예비 심사보고
: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
<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참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세입총괄 >

- 질)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002년도 보다 증액 편성하였는데 건물증가분과 과표 증가분의 자세한 내용은?
- 답) 재산세는 과표가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이 전망되며 건물증가는 국동 재건축조합, 교보생명, 방배분동의 재개발사업, 현대개발투자, 서초동 삼성쉐르빌 아파트 등 94만 4,000㎡의 증가가 전망되며, 종토세는 4.2%가 증가된 것으로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에 적용률은 33.7%이며 그것을 적용 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였고 서초구는 전년도 공시지가가 4.2%가 인상되어 그부분을 인상율로 하였음.
- 질) 국유재산 임대수입, 구청사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 시유재산 임대료 등이 지난해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구청사 임대료는 1991년도부터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은 이유와 은행 등은 공간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이전하였는데도 별로 인상되지 않은 이유는?
- 답) 우리은행 임대료는 건물감정액이 평당 79만 9,500원이므로 여기에 면적을 곱해 5,900만원이 나왔으며, 그리고 토지평가액은 2002년도 공시지가가 평당 403만원이 나와 여기에 면적을 곱해 3억 579만 6,400원이 나왔고, 연간 임대료는 건물 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더해서 산출하며 건물평가액은 건물감정에 대부료율을 곱해 즉 건물감정액이 5,900만원에 1,950만원을 하니까 295만 150원이었고 토지 평가액은 토지가격에 대부료율에다 그것을 곱해서 1층에 대한 요율을 하니까 764만 4,910원으로 해서 두가지를 합해 1,059만 5,060원이 나왔음.

질) 도로사용료가 내년도 예산에 22억 2,000만원으로 금년 징수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건설붐이 일어나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적게 책정한 이유는?

답) 금년도 도로에 관한 수입은 현재 23억인데 앞으로 1억을 더 징수할 것으로 추정되며, 내년도에는 건축붐이 다소 수그러지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임.

질) 구청사 주차장 수입과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 전보다 감 편성한 이유는?

답) 구청주차장 수입은 7,500만원으로 2002년도 보다 900만원 증편성되었고 구민회관주차장 수입은 2002년도 2,25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감편성하였는데 10부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고, 민방위대원 교육에 따른 민방위 대원 감소로 수입감소가 예상됨.

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

질)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 운용계획에 2003년도에 시설비로 3억 1,100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지?

답)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 계속 발생된 민원으로 타구장의 마루설치, 식당을 축소하고 에어로빅장을 확장, 헬스기 구입, 탈의실 옷장 교체를 금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 완료함.

질) 기금운용계획은 그해에 사용한 기금과 지출을 맞추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올해 집행한 것을 내년도에 지출하겠다는 것은 예산집행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는데?

답) 금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을 만들어 처리를 하고 내년도에 처리하는 것은 예산 집행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동감하며 금년 23일에 의회가 끝나는데 23일까지 처리할 수 있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제출토록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 해서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하겠음.

- 질) 반포동 32-13 체비지 매입 요구에 대하여 2002년도 상반기 서울시로부터 의견을 문의한 바 있고 서초구는 본 체비지 매입계획의 필요성을 감안 타인 매각을 보류 요청한 바 있으며 입대기간이 2003년 3월 9일자로서 매입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추가 반영할 의향은?
- 답) 반포동 32-13 어린이 도서관 부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음.
- 질)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관리비가 2001년도에 1억 5,758만원 편성 1억 2,000 만원 집행 2002년도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03년도에 1억 5,300 만원 편성 요구하는데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사유는?
- 답) 서무관리 시책업무추진비중 구민화합, 구정업무 활성화, 기관간 업무협의비는 25개 구청 중 서초구가 제일 적으며 시민참여연대에서 기관장 판공비 업무추진비를 조사시 많은 구는 2억에 비해 서초구가 제일 적다고 한 바 있어 상임위에서 50% 감한 것을 예결위에서는 재고해 주기 바람.
- 질) 구청사 소규모공사로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무엇을 하였는지와 2003년도에 어떤 공사를 할 것인지?
- 답) 구청사, 구민회관, 보건소 청사는 청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공사가 많이 되며 직장어린이집이 급해 구의회 구유재산관리 승인도 못받고 신청만 해놓고 당장 설계가 급해 설계비로 하여 추경에 확보해야할 예산임.
- 질) 자산취득비로 동 책사랑문고 도서구입비로 1억이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추정액은?
- 답) 2002년 11월말 현재 1만 3,713권을 구입해서 8,990만원이 집행되었고 12월까지 거의 다 소진되며, 이 사업이 도서관 확충내지는 독서 저변인구 확대에 구 행정력을 집중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하였으나 독서 저변인구 확대를 위해 예결위에서 재고하여 주기 바람.

질) 동행정 실적 심사는 매년 100만원 하다가 배로 편성한 이유는?

답) 97년도부터 6~7년간 계속 100만원 이었으나 타구의 행정실적 심사는 1~3억씩 책정되어 있어 타구와의 형평성이 현격한 차이가 나며 동직원 수만 20명 정도로서 100만원은 너무 적어 처음으로 인상 편성한 것임.

질) 서초구민체육센터수익적립기금을 실제로 금년에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2003년도로 표기를 해서 실제와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수정을 해야 하며 집행부의 어려운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조례나 관계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나 당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파생된 문제로서 향후 처리 의견은?

답) 현재 기금액은 4억 7,000만원이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고 만기가 2003년 3월 19일이며 이율은 5.35%로 해약시에는 2%로 줄어 4억7,000만원의 정기예금 해약시에는 1,600만원의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시행에 따른 금액을 2003년 3월 19일 Y에게 주기로 하고 Y 또한 수용한바 있으며, 1,600만원의 이자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지출할수 있는 반면에 구민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또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일부 절차에 어긋난다는 있으나 이런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 바랍.

기획재정국

질) 일반운영비에 기관공통운영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2년도에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주정액은 얼마인지와 여비도 9,619만 2,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2002년에도 되어 있는데 집행주정액은?

답) 일반운영비가 당시에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3,023만원이 지출되었고 여비는 9,600만원 편성에 1,980만원 정도 소요되었음.

- 질)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집행실적이 저조하면서도 매년 거의 같은 금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 답)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예비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면 지하철파업시 구청에서도 비상시에 대비해 상황실 운영, 급량비 지급, 종사자에 대한 설득작업 등이 발생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질) 연금부담금이 감 편성된 사유와 2001년도 예산액과 집행액은?
- 답) 전년도에 공무원 연금에 관한법이 바뀌었으며 종전 부담률이 7.419%에서 6.408%로 예산편성기준이 변경 통보되었고 2001년도에 45억 5,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9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질) 일반운영비로 내년도에 2억 9,369만 5,000원을 요구하였고 2002년도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집행 주정액과 2001년도의 예산액과 집행액은?
- 답) 2002년도에 2억 5,900만원 편성에 1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02년은 3억 편성에 10월말까지 1억 6,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2억 3,400만원이 집행될 예정임.
- 질) 법제전산운영에 일반운영비로 7억 8,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연말까지의 집행 주정액은?
- 답) 연말까지 5억 9,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질) 방배동, 서초동 사업승인 부지내 도로를 대지화시켜 2001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은 후에 특히 방배동 지역 같은 곳은 더블되는 곳이 84㎡가 있어 그것을 절감해준 곳이 있으나 2001년도와 2002년도의 땅값이 많이 오른 상승지분이 있는데 우리가 20% 범위내에서 더 받는다 해도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더 받을 용의는?

답) 2001년도 12월에 감정평가를 하여 통지를 한 바 있으나, 사업승인을 받은 회사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기존도로를 우리구 용도 폐지후 사라고 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 도로부분으로 많이 내놓았으므로 회사에서는 억울하다고 해서 아직 계약체결을 안했고 12월말까지는 계약을 할 것으로 보이며, 12월말까지 계약을 안한다면 재감정을 하여 조치하겠으며 감정가격의 유효기간은 1년임.

생활복지국

- 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2003년도 운용계획은 금년보다 많이 감소되고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되어 기금규모가 감소를 하는데 2004년도 경이면 기금부족으로 대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대처계획과, 수입계획에 순세계 임여금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2001년도 이월금이 2,01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액이 순세계임여금이 이월이 되어서 2003년도 예산이 되는데 산출내역에는 2001년도 이월금이 2,018만 4,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어 착오는 아닌지와 기금 교갈과 목적달성을 따른 기금 일몰 시기는?
- 답) 2001년도가 아니고 2002년도 이월금이며 환경미화원의 노령화로 지금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 줄어드는 상태이고 10여년만에 환경미화원을 특별채용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 오면 그에따라 운영되어야 하므로 폐지시기는 판단을 못한 상태임.
- 질) 식품진흥기금중 서울시 기금 전입금에서 출연금이 2002년도보다 감소한 이유와 기금지출계획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쓸수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화장실개선 인센티브 제공은 청소과행정과에서도 화장실 개선 등을 하고 있는데 위생과에서 기금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 답)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을 징수하면 60%는 구에 40%는 시의 식품진흥기금으로 적립되고 각구의 식품진흥기금이 적어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2002년도에는 월드컵 관련해 3억 2,9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2억 정도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고, 업무 추진비는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식품진흥기금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이며, 서울시 지원에 의거 음식점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7개소의 우수화장실을 선정 1년에 3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음.

- 질)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용역비로 7회에 7,227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7회 정도로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이므로 주변 사람에게 관리를 맡기고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면 관리에 효율을 기할 것이라 판단되어 검토할 사유는?
- 답) 올 4/4 분기부터 음식물 쓰레기 용기를 세척하게된 배경은 수거용기가 주택가 뒷골목에 설치되어 있고 각종 기름때 등에 절여 세척이 용이하지 않으며, 각 동장에게 세척토록 하였으나 인력부족으로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용기를 비치하는 것을 혐오하여 관리할 주민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가능한다면 그런 방안도 검토하겠음.
- 질) 서초 여성회관 운영실적 자료에 19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지원비가 똑같이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반해 2003년도에는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 답) 처음 개관이후 연간보조금 1억 2,000만원으로 수녀회에서 운영하여 왔으나 그동안 알뜰한 운영과 지역주민의 활성화 기대 등으로 무료사업의 확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내년도에는 특수사업을 추가하고자 상향 편성요구를 하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장애아를 위한 특수아동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확대를 할 예정이며, 관내 성폭력 상담소가 있었으나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성폭력 등 여성상담을 주로하는 전문 상담실을 확충할 예정임.
- 질) 폐기물소각처리용역비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는데 사유는?
- 답) 2002년 당초 예산편성시보다 발생량이 늘어나 추경에 부족분을 반영 2002년도 10월까지 2,098톤이 발생되어 이를 기준으로 2003년도 발생량 2,880톤을 추정 편성한 것임.

질) 환경정비 쓰레기잔재 처리비는 전년도에 1억 예산 편성하였다가 금년도에는 1,800만원으로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도 2003년도에는 10톤이 더 증가 되었는바, 환경문제는 점진적으로 좀 더 많이 줄어 들어야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은 사유는?

답) 환경정비 잔재처리비는 2001년도에는 1억을 편성한바 있는데 수해가 발생하여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등 각과에서 예산편성의 근거가 없다하여 청소과로 전체 편성하였는데 올해는 큰 수해가 발생치 않아 예산은 1,000만원 정도를 집행하여 내년도 1,800만원을 편성한 것이고, 통상 음식물 쓰레기가 60톤 발생량을 잡아 왔으나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가는 농장이 망한다던가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처리할 수 없는 양을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져 발생량 10톤을 늘려 잡은 것임.

질) 서초구노인복지기금으로 5억원이 적립될 때까지 기금으로 적립을 한다고 하였는데 조례에도 없는 사항으로서 누가 결정한 것인지?

답) 조례제정시 구의회 심의의뢰시 논의가 있어 당시에 5억이라고 하였으며 2000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세울때 방침서에 매년 5,000만원씩 적립 5억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음.

도시관리국

질) 옛지명 및 향토문화투어 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나 향토문화투어라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서 도시정비과에 편성한 사유는?

답) 옛지명 및 향토문화투어로 30만원씩 8회에 걸쳐 24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도시 정비과에 새주소 추진반이 있는데 새주소 업무를 추진시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옛지명 등의 유래를 발굴하여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서 지명의원중 이용환씨가 땅이름 학회장으로서 역사, 문화, 지리 등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런 전문가를 초정해 잊혀져가는 우리의 유래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임.

- 질)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몇%로 화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대여를 해주는지 또 기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를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 답) 서초구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운용은 우리구 특화사업인 화훼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기금의 총 조성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4억이며 이자발생 2,562만원이고 상환금이 1,946만원으로 총 조성액이 4억 4,508만원이며 융자지원은 4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43개농가에 융자지원한바 있고 조건은 3년 기간 3년 균등분할상환에 연리3%이며 대상은 우리구 거주 화훼농가 및 영농법인임.
- 질)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은 도시정비과 소관이지만 행정기구설치조례나 시행규칙 등에 의하면 문화공보과 업무에 문화예술진흥 문화탐방기획업무가 분장되어 있어 옛지명 및 향토문화투어가 도시정비과의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에 따른 파생업무로 보이나 이 업무를 관련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과로 넘길 의향은?
- 답) 직무명령에 의해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완료이후의 새주소 업무를 어디서 담당할지는 결정이 안된 상태로서 실제시행의 적용운영은 부서를 추후에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질) 건축과에 일반운영비가 2002년도에 6,349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년말 까지 집행주정액과 2002년도에는 5,900만원을 편성하여 2,1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불용한 바 있는데, 계속해서 2002년도에 6,300만원, 2003년도에 5,7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 답) 총괄적인 예산액 1억 2,300만원중 예비비 성격의 금액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예로서 전세융자금 미상환 손실금의 경우 사고 발생시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 3,000만원 정도는 사고 미발생시에는 그대로 남는 경우가 되겠고, 일반운영비 6,300만원중 11월까지는 3,000만원정도 썼고 2,300만원 정도 불용이 생길

것으로 판단되며 불용사유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건축 안전진단에 따른 안전진단 수수료가 연 25회로 잡혀 있으나 금년 3월에 서울시로 이관되어 1,000만원이상 불용되었고, 또한 가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한 부분이 있으며, 안전진단 수당이 줄어든 것도 중요한 요인임.

건설교통국

- 질) 흐늘마을 진입도로 공사 토지 매입비로 2억 6,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기준하였는지 또는 현가로 계상하였는지와 현시가와의 차이가 현격하면 100%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 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요즘 보상되는 가격을 참고하여 편성한 것이며, IMF 때에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잘되었으나 요즘은 지가가 상승하면서 감정 가격으로 하면 실거래 가격으로 100%는 안되나 85%에서 90%정도는 되어 현재까지는 보상이 되고 있음.
- 질) 재해대책기금의 지출계획에 금년도에 3억 4,052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내년도 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을 편성 하였는데 금년도 집행내역은?
- 답) 2002년 3월에 봉배2동 2939번지구지정비 공사에 1,610만 3,310원을 집행하였고, 2002년 9월 30일 빗물받이 신설공사 및 개량공사에 668만 9,410원을 지출하였으며, 2002년 10월4일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 흡관 구매로 403만 1,640원이, 2002년 10월 18일 세곡천 주변의 하천시설물 수해복구공사에 2,505만 4,740원, 2002년 11월13일 관내 하수시설물 복구 공사에 1,342만 4,430원, 2002년 11월 21일 관내 하수 시설물 수해복구 공사에 6,473만 3,000원, 2002년 11월 21일 양재천 주변 하천 시설물 복구공사에 2,952만 7,000원, 2002년 11월 28일 2차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에 1억 5,689만 4,030원 및 폐기물 처리용역에 1,544만 5,000원이 지출되었고 12월에 들어서는 관내 하수시설물 수해복구 공사에 흡관 구매대금으로 66만 6,510원 등이 지출되었음.

- 질)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생긴이후 매년 적립만 하고 사용할 실적이 없는데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으면 일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3조 제1항의 기금의 용도 규정에 비추어 2002년 12월 2일자 구보에 게재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등이 D급으로 판정되어 재건축종이며 이것이 D급으로 판정이 되었다면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해서 안전 진단을 받았어야 하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 답)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난후 집행한 실적은 현재까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 제3조 제1항 1호에 위험시설물이나 안전진단 보수보강에 널리 쓸수 있도록 각 부서에 홍보를 하고 활용하도록 하겠음.
- 질) 청계산 근린광장주차장 유료화관리시설 등 공사로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계산 근린광장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유료화 할 수 있다고 보는지?
- 답) 청계산 근린광장은 당초에 주차장으로 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나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차장으로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어 근린광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의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장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근거로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게 되어 있음.
- 질) 공영주차장 위약변상금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공영 주차장 위약변상금을 지급하는 사유는?
- 답) 위약 변상금은 입찰할 경우 입찰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소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변상해 주는 것임.
- 질)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20%를 서초구 주민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차량의 번호판을 확인 추정한 것은 등록 사항과 실제 이용하는 서초구민수와의 과리가 예상되며 당초 주차장 운영 초기에 시행했던 서초구민에 대하여 동에서 스티커를 발부하여 무료로 이용토록 할 의향은?

- 답) 주차장 이용시민의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구민의 이용율을 파악한 것이며 서초구민에 대해 과거와 같이 서초구민에 대하여 스티커 발부 등 5~6회에 걸쳐 검토를 하였으나 형평성 등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추진 할 것임.
- 질) 자산 및 물품 취득에 하수도 준설기 6대 구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제껏 하수도 준설기가 없었는지?
- 답) 15조가 있었으나 2001년도에 2대를 폐기처분하고 금년도에 7대를 폐기처분하고 현재는 6대가 남아 있으나 노후되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내년도에 폐기하고 6대를 새로 구매할 계획임.
- 질) 내년도에 하수도 준설기 중 노후된 하수도 준설기를 폐기하고 새로 6대를 구매한다고 하였는데 예산서에 수리비로 12대가 계상된 것은 잘못이 아닌지?
- 답) 하수도 준설기는 2대가 1조로 편성되어 작업을 하며 6대로 표기된 것은 6조로 표기되어야 할 부분이며 내년도에 새로 구매하여도 관리를 위한 수리비를 편성해야 함.
- 질) 서초구청 보유 견인차량은 몇 대인지?
- 답) 서초구청 보유 견인 차량은 2대가 있는데 1대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치차량 견인에 사용하고 있으며 1대는 주차관리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에 활용하고 있음.
- 질)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으로 민간대행회사는 1일 10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구보유 불법 주·정차 견인차량은 1일 0.6대를 견인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직원의 인건비를 지출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 답) 견인차량기사가 견인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 업무까지 겸해서 하고 있으며, 견인업무보다는 서초3동 반포로와 신사임당로 삼거리가 교통체증이 심해 전담 배치하여 주차단속을 겸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견인실적만으로는 활용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우리구의 불법 주·정차업무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음.

5. 토론 및 토론자

o 수정동의안 발의 (발의자 : 최정규 위원)

토론요지 : 별첨 수정조정내역 참조

6. 수 정 암 의 요 지 : 별첨 수정조정내역참조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출석의원 9명, 찬성 6, 반대 2, 기권 1)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체계자구정리내용 : 없음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조정내역

【 일반회계 】

< 세 입 >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장·항·목)	2003 요구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예 결 위 심사조정	승 인 안	심 사 조 정 내 역
합 계	154,473,450	증48,000	증48,000	154,521,450	
100 지방세수입	78,798,168			78,798,168	
200 세외수입	59,953,226	증18,000	증48,000	60,001,226	
210 경상적세외수입	24,444,150	증18,000	증48,000	24,492,450	
212 사용료수입	2,589,124	증18,000	증18,000	2,637,124	
212-07 기타사용료	316,350	증48,000	증48,000	364,350	1) 문화공보과 2) 반도근린공원테니스장사용료 (-48,000) 증18,000
500 조정교부금	3,044,741			3,044,741	
600 보조금	12,677,315			12,677,315	

*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 세 출 >

(단위: 만원)

예 산 과 목 (정·형·목)	2003 요구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예 결 위 심사조정	승 인 안	심 사 조 정 내 역
합 계	154,473,450	154,521,450	154,521,450	154,521,450	
1000 일반행정비	71,572,978	△1,763,100	△1,722,200	69,850,778	
1221 서부관리	4,097,629	△118,400	△77,500	4,020,129	
203 업무추진비	160,580	△48,400	△7,500	153,080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우호도시 상호교류 및 간담회 $15,000 \rightarrow 7,500$ (△7,5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40,000	△70,000	△70,000	70,000	0) 시설비 1) 직장어린이집건립설계용역비 $70,000 \rightarrow 0$ (△70,000)
1224 동행정운영	8,813,840	△1,291,000	△1,291,000	7,522,840	
203 업무추진비	193,896	△25,000	△25,000	168,896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 재해대책관련시책업무추진비 $50,000 \rightarrow 25,000$ (△25,000)
301 일반보상금	942,315	△36,000	△36,000	906,315	09 황사실시보상금 1) 동정보고회 $36,000 \rightarrow 0$ (△36,000)
308 자치단체등이전	1,180,000	△1,180,000	△1,180,000	0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1) 학교교육환경개선(운동장녹색잔디구장사업등) $1,000,000 \rightarrow 0$ (△1,000,000) 1) 유치원지원보조금 $180,000 \rightarrow 0$ (△180,000)

(단위:천원)

예산과목 (장·형·목)	2003 요구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예결위 심사조정	승인안	심사조정내역
405 <u>자산취득비</u>	106,780	△50,000	△50,000	56,78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서초2동신청사집기등 $50,000 \rightarrow 0 (\Delta 50,000)$
1231 <u>문화공보운영</u>	1,656,385	△342,000	△342,000	1,314,385	
201 <u>일반운영비</u>	781,111	△181,000	△181,000	600,111	01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서초구소식(반상회보) $132,000 \rightarrow 66,000 (\Delta 66,000)$ 2) 신문도서구입비 3) 지역홍보자구독 $45,000 \rightarrow 30,000 (\Delta 15,000)$ 2) 조기어린이외국어교육센터운영 (내곡동종합시설) $100,000 \rightarrow 0 (\Delta 100,000)$
301 <u>일반보상금</u>	430,182	△11,000	△11,000	419,182	09 향사실시보상금 1) 금오음악회지원(공연단체실비등) 2) 기타연주 $23,000 \rightarrow 12,000 (\Delta 11,000)$
307 <u>민간이전</u>	112,100	△100,000	△100,000	12,100	02 단간경상보조 1) 서초문화원설립 $100,000 \rightarrow 0 (\Delta 100,000)$
405 <u>자산취득비</u>	100,000	△50,000	△50,000	50,000	02 도서구입비 1) 동쪽사랑문고 도서구입 $100,000 \rightarrow 50,000 (\Delta 50,000)$

(단위:천원)

예산과목 (장·항·목)	2003 요구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예결위 심사조정	승인안	심사조정내역
1241 기획예산운영	521,255	△11,700	△11,700	509,555	
201 일반운영비	293,695	△11,700	△11,700	281,995	01 일반운영비 1) 일반수용비 2) 서초아카데미독요강수 3) 인쇄물 18,000→9,000△9,000 3) 현수막 4,800→2,400△2,400 3) 녹음료 600→300△300
2000 사회개발비	66,612,480	△621,500	△601,500	66,010,980	
2221 환경관리	175,768	△1,500	△1,500	174,268	
405 자산취득비	14,500	△1,500	△1,500	13,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1) 자산취득비 2) 개인휴대용단말기(PDA) 1,100→0(△1,100) 2) PAD용 프린터 400→0(△400)
2231 공원관리	1,947,378	△500,000	△500,000	1,447,378	
401 시설비 및 부대비	1,161,176	△500,000	△500,000	664,176	01 시설비 1) 새우촌근린공원도지보상 500,000,000원=500,000 →0(△500,000)

(단위:천원)

예산과목 (장·항·목)	2003 요구안	상임위원회 심사조정안	예결위 심사조정	승인안	심사조정내역
2311 사회복지	13,563,637	△40,000	△20,000	13,543,637	
309 민간이전	229,500	△40,000	△20,000	209,500	
					02 민간경상보조 1) 사회복지관운영비보조 2) 472복지관특별사업지원 $10,000,000원 \times 47\% = 4,700,000원$ $\rightarrow 20,000(\triangle 20,000)$
2321 가정복지	19,840,045	△80,000	△80,000	19,760,045	
307 민간이전	1,649,109	△80,000	△80,000	1,569,109	
					02 민간경상보조 1) 서초여성회관운영비지원 $200,000 \rightarrow 120,000(\triangle 80,000)$
3000 경제개발비	13,135,021	△900	△900	13,134,121	
3331 건설관리	642,128	△900	△900	641,228	
405 자산취득비	1,640	△900	△900	740	
					01 자산별儿률취득비 1) 커데라 300,000원 $\times 3\% = 900$ $\rightarrow 0(\triangle 900)$
4000 민방위비	869,326			869,326	
5000 지원및기타경비	2,283,645	증2,433,500	증2,372,600	1,656,245	
5411 예비비	2,283,645	증2,433,500 (세입18,000)	증2,372,600 (세입18,000)	1,656,245	$2,372,600 - 2,324,600 = 48,000$

※ 증감액표시는 「목」까지 기재,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 기금운용계획 】

가. 청사건립기금 (조정된 부분만 표시하고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음)

1) 수입계획 : 변동없음

2) 지출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안	상임위안	예결위안
1.2.1 사무관리 401	구청시설비 구청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① 설계비 206,000 ② 건축비 2,500,000 02 경비 100,000 03 시설부대비 5,000	전액식제	상임위안

* 계속비사업조서 삭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적립금)에 반영